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규정	규정번호	3-8-25
		제정일자	1998.03.01.
		개정일자	2014.03.01.
		개정차수	4차
		소관부서	교무입학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24조 제3항에 의한 안산대학교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입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부정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종자료 보안 및 관리 입회에 관한 사항
3. 사정자료 전산입력, 처리 및 출력과정의 입회에 관한 사항
4. 면접진행 입회에 관한 사항
5. 합격자(예비후보자 포함) 사정 입회에 관한 사항
6. 미등록 등 결원보충과정의 확인 입회에 관한 사항
7. 자체 감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학전형과정의 입회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평교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매학년도 전형일 전후 2월로 하되, 전형회수가 수차일 경우에는 1회차 전형일 1월 전부터 마지막 회차 전형일 1월 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별로 직능을 분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총장 및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시간관계로 전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항별로 직능분장 담당위원과의 협의로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 전체회의에의 통보로 이를 갈음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의에 관계 교직원의 출석과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서기) 위원회는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둔다.

제9조(시정조치) 위원장은 입학전형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서약)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